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 우리 결혼 했어요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 우리 결혼 했어요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 우리 결혼 했어요

인쇄 2023년 1월 발행 2023년 1월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http://www.moj.go.kr> 02-2110-3314  
집필진 최보선(한국법교육센터 연구원)  
유다혜(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  
감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윤익법률사무소 변호사 경규연  
디자인·인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2285-5278

## Contents

<b>PART 1</b>	<b>결혼생활과 법</b>	<b>02</b>
	혼인의 권리와 의무 가정폭력	
<b>PART 2</b>	<b>자녀와 법</b>	<b>04</b>
	아동학대 학교폭력	
<b>PART 3</b>	<b>한국의 이혼제도</b>	<b>06</b>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더 알아보기 이혼 후의 권리·의무	
<b>PART 4</b>	<b>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b>	<b>08</b>

## 혼인의 권리와 의무



### 동거의 의무

동거의 의무는 부부가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일시적으로 따로 살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부양의 의무

부양의 의무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서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한 사람만 일을 해서 돈을 벌 경우 다른 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 협조의 의무

협조의 의무는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의무입니다.

집안일도 함께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는 결혼 후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 더 알아보기 **평등한 부부**

대한민국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평등합니다. 평등이란 권리나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고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은 가족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의 유형



#### 유형 1

**신체적 폭력**  
배우자, 자녀 때리기 등



#### 유형 2

**정신적·심리적 폭력**  
욕설, 모욕의 문화 무시, 간섭·의심 등



#### 유형 3

**성폭력**  
강제적인 성적 행동



#### 유형 4

**경제적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음, 무분별한 소비 등

### 가정폭력 신고하기

-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발견하면 **경찰청(☎112)**에 신고 전화
- 한국어가 어렵다면 **다누리 콜센터(☎1577-1366)**에 상담 및 지원 요청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은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피난 시설 운영 및 의료, 법률, 검찰, 경찰 등 긴급 지원서비스 연계 활동



## 아동학대

###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p><b>유형 1</b> <b>신체 학대</b> 때리기, 할퀴기, 몸 묶기 등</p>	<p><b>유형 2</b> <b>정서 학대</b> 욕설, 다른 사람과 비교, 감금(가두기) 등</p>
<p><b>유형 3</b> <b>성 학대</b>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p>	<p><b>유형 4</b> <b>유기·방임</b>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 치료를 하지 않는 것,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등</p>

### 아동학대 신고하기

-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경찰청(☎112)에 신고 전화

##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유괴),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p><b>유형 1</b> <b>신체 폭력</b> 때리기, 장난이라면서 꼬집거나 밀치는 행위 등</p>	<p><b>유형 2</b> <b>사이버 폭력</b> 메신저에 초대하여 욕설, SNS에 저격글 올리기 등</p>
<p><b>유형 3</b> <b>성폭력</b> 성적인 놀림, 성추행 등</p>	<p><b>유형 4</b> <b>따돌림</b> 일부러 피해 다니기, 어울리지 못하게 하기 등</p>

### 학교폭력 신고하기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발견하면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 전화
  -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 문자 신고 : #0117 (요금 무료)
  - 온라인 신고 : 안전 Dream(www.safe182.go.kr)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란?

- 혼인 관계를 끝내는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협의 이혼 : 배우자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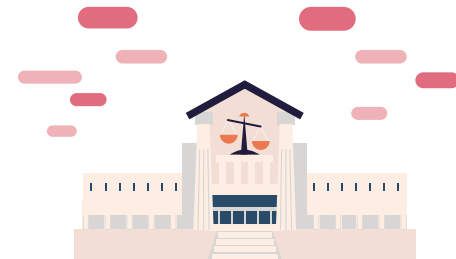
### 🔊 더 알아보기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더 알아보기

## 이혼 후의 권리·의무

- 🔊 **친권**
  -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
- 🔊 **양육권**
  -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권리
- 🔊 **양육비**
  - 이혼한 뒤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사람은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청구
- 🔊 **면접교섭권**
  -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연락할 수 있는 권리
- 🔊 **위자료**
  -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 이혼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까지만 청구 가능
- 🔊 **재산분할**
  - 이혼할 때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눠가짐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만 청구 가능



## ☛ 경찰청(☎112, [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 신고접수, 국가보안, 방범, 범죄수사 등
- 치안, 방범, 범죄수사, 경비교통, 국가보안 등의 역할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 ☛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www.safe182.go.kr](http://www.safe182.go.kr))

-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 ☛ 다누리 콜센터(☎1577-1366, [www.liveinkorea.kr](http://www.liveinkorea.kr))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피난 시설 운영 및 의료, 법률, 검찰, 경찰 등 긴급 지원서비스 연계 활동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취업·임신과 육아·상담실 등의 정보 제공
- 지원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등 13개 언어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출입국·체류 상담 서비스와 생활정보 제공
- 지원 언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등 20개 언어
- 이용 시간 : 평일 09:00~22:00(단, 18:00~22:00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상담)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http://www.klac.or.kr))

- 법률 구조 안내, 법률서식·상담사례 확인, 사이버상담 신청, 방문상담 예약 등
- 이용 시간 : 평일 09:00~11:50, 13:00~17:50 전화 상담